

### Question

본 감리단은 ○○아파트 신축공사(600세대, 공사비 600억원)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사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시공사는 2005년 6월 14일자로 구청 및 감리단에 착공계를 접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입장에서 당현장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착공일 이후의 해당분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2005년 5월 1일자로 당현장으로 발령(증빙서류 첨부)받아 착공일 이전부터 현장에 상주하였으므로, 2005. 5. 1~2005. 6. 13 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
2.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본 감리단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감리단은 2005년 6월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접수받았지만 그에 대한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안전장비 구입명세서 등)는 첨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감리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발주자(시행사) 대행으로 시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 [ 접수번호 : 11028298 ]

### Answer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 3. 17)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수행하였음은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신규 및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각 공종별 해당 작업에 대한 문자정보(개인별 바이오리듬, 안전 동료, 교육 및 행사, 공종별 작업의 위험요인,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등)를 제공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력한 근로자를 인식하면 공중파 인터넷을 이용 현장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개발·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문인식기는 안전PART외 사용하지 않음, 목적은 근로자 문자정보 인지용임) 이때 제반 사용된 문자정보 개발비, 지문인식기, 컴퓨터, 모니터, 인터넷사용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접수번호 : 11049196 ]

## Answer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현장 작업근로자의 개인별 바이오리듬 체크, 교육·행사관련 정보 제공, 공종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제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법령 및 의무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접수번호 : 11024885 ]

##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법 제6조에서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에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무(준수사항)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법 제19조제4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